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6 선고 2021가합510869 판결 [공사대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맥

담당변호사 이순호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린

담당변호사 이수완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38,229,45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 원고는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수장공사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다. 원고의 대표자 C은 D과 부부 사이이다.
- 2) 피고는 철물 제작 설치 및 패널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수장공사와 관련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

나. 피고의 수장공사 하도급

- 1) 피고는 2015. 3. 6.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F가 발주한 서울 노원구 G 외 2필지 소재 H 복합시설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H 수장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3. 9.부터 2015. 4. 30.까지, 공사대금 434,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H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 피고는 2015. 6. 2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와 사이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청주시 흥덕구 J 소재 K 신축공사 중 경량철골 및 칸막이공사(이하 'K 수장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5. 11. 30.까지, 공사대금 887,7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위 하도급계약은 2015. 11. 30. 공사기간을 2016. 1. 20.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고, 2016. 3. 30. 공사기간을 2016. 2. 18.까지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1,003,86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다(이하 '2차 K 하도급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는 피고의 대리인인 D으로부터 K 수장공사 중 칸막이 공사를 재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1976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칸막이 공사대금 183,7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8. 12. 18. 'D이 피고로부터 위 칸막이 공사계약 및 그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대리권을 유효하게 수여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L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L가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의 표현대리책임, 명의대여자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2020. 8. 13. '피고가 D에게 대리권을 수여하거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바 없고 D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L의 항소가 기각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51152호, 이하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이라 한다).

2) 이에 L는 서울남부지방법원 19가단263794호로 원고 및 D을 상대로 위 칸막이 공사대금 183,700,000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0. 11. 12. 'D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L와 위 칸막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민법 제135조 제1항 또는 제750조에 따라 L에게 위 칸막이 공사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D을 지휘·감독하는 회사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L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L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E로부터 H 수장공사를 H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 434,500,000원에 추가 공사대금 47,300,000원을 더한 합계 481,800,000원(434,500,000원 + 47,30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위 하도급 공사대금의 96%인 462,528,000원(481,800,000원 × 0.96)에 재하도급받았다.

또한 피고는 I로부터 K 수장공사를 2차 K 하도급변경계약상 공사대금 1,003,860,000원에 위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공사대금 27,830,000원을 더한 합계

1,031,690,000원(1,003,860,000원 + 27,830,000원)에 하도급받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를 위 하도급 공사대금과 같은 금액으로 재하도급받았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재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1,494,218,000원(462,528,000원 + 1,031,6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5. 18.까지 총 1,255,988,547원만을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38,229,453원(1,494,218,000원 - 1,255,988,547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가) H 수장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대금은 401,500,000원(피고와 E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434,500,000원의 92.4%), K 수장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대금은 927,566,640원(피고와 I 사이의 하도급 공사대금 1,003,860,000원의 92.4%)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총 1,309,176,369원(H 수장공사 401,683,188원 + K 수장공사 907,493,181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주식회사 M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21,691,9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라) 설령 미지급 공사대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H 수장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대금 액수

피고가 2015. 3. 6. E로부터 H 수장공사를 434,5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3. 9. 피고로부터 H 수장공사를 401,5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H 수장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대금 액수가 401,500,000원을 초과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K 수장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대금 액수

피고가 2015. 6. 22. I로부터 K 수장공사를 887,700,000원에 하도급받은 사실, 위 하도급 공사대금이 2016. 3. 30. 1,003,860,000원으로 증액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K 수장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이를 완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K 수장공사의 재하도급 공사대금 액수는 2016. 3. 30. 증액된 피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2015. 10. 19.자 공사견적서(갑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견적서’라 한다) 내지 2016. 1.자 하도급공사변경승인신청서(갑 제18호증, 이하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서’라 한다)상의 추가 공사대금 27,830,000원을 합한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의 100%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8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I에게 2015. 10. 19. 압축 스티로폼 타설 부착 등의 추가 공사에 대하여 24,891,5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견적을 내고, 2016. 1.경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반영하여 하도급금액을 807,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서 937,9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증액하는 것에 대하여 승인을 요청하면서, 압축 스티로폼 타설 부착 등의 공사비 23,513,950원을 기타공사 항목에 기재하여 추가공사비를 청구한 사실, 그런데 피고와 I이 2016. 3. 30. 2차 K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한 결과 그 공사대금은 피고가 이 사건 변경승인신청서에서 증액을 신청한 130,900,000원에서 25,300,000원이 모자란 105,600,000원만 증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I이 피고에게 이 사건 견적서 또는 변경승인신청서에서 청구한 추가공사비를 전액 인정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위 변경계약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 25,300,000원을 피고가 따로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고는 K 수장공사 역시 H 수장공사와 동일하게 전체 하도급 공사대금의 92.4%(401,500,000원 / 434,500,000원 × 100,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를 재하도급 공사대금으로 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적어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K 수장공사를 927,566,640원(1,003,860,000원 × 0.924)에 재하도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는 2016. 5. 18.까지 피고로부터 위 각 재하도급 공사대금 중 일부로 총 1,255,988,547원을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73,078,093원[1,329,066,640원(H 수장공사 401,500,000원 및 K 수장공사 927,566,640원) - 1,255,988,54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6. 5.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위 각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에 정한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등 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H 수장공사 및 K 수장공사에 대한 재하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달리 특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H 수장공사는 2015. 10. 말경, K 수장공사는 2016. 5. 말경 각 완성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은 각 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21. 2. 15.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공사대금에 관한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등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므로, 위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때, 즉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의 판결선고일인 2018. 12. 18.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권리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다는 사유는 될지언정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제1관련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각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손승온, 판사 양소영, 판사 오정훈